

결혼이민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고 은 영 (목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1. 들어가는 말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자본과 상품 뿐 아니라,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출생지이거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990년 1억 2천만 명에서 2003년에는 1억 9천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주, 인권과 개발”, 2007) 이주의 대부분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개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이다. 이주의 주요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이며, 미시적 요인으로는 자기실현에 목표를 두고 결혼이나 교육, 직업을 택해 이주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 1990년을 기점으로 송출 국가에서 유입 국가로 서서히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체류 외국인 수는 2008년 8월말 현재 120만여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전체 국민의 2.5%를 넘는 수치이다.

그동안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을 급격하게 지대한 관심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제결혼을 통해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국제결혼건수는 43,121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13.6%에 달했으며, 같은 해 외국인의 국적취득건수는 17,431건이었다. 말하자면 그 해에 결혼한 사람 8쌍 중에 한쌍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2008년 말 현재 126개국 14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2%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2006년부터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의 증감현황

국제결혼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이나 제도, 법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연동하여 움직인다. 최근의 국제결혼은 잘사는 나라의 문화적 영향이 이동을 불러일으켜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결혼이주가 시작된 이후 총 혼인건수와 국제결혼 건수를 비교해 보면,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와 국내결혼의 증가 추이의 증감을 분석할 수 있다. 1990년에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건수가 1.2%인 것에 비해, 2006년에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11.9%이다. 국제결혼은 200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3.6%까지 상승하였다.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이 줄어든 것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예고로 중국교포 등의 국내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증감

(1) 결혼 이민자의 국적 분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인의 경우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으로 22.7%의 비율이다. 두 국가가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합계 72.5%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남성은 주로 동남아 중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화와 피부색을 가진 여성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에 주로 중국으로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국적의 폭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별 증감 추이

최근 7년 동안의 외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2001년 중국 부인의 경우 70%로 외국인 부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49.8%로 20%정도 감소하였다. 최근 구성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다. 2001년 베트남 부인의 경우 외국인 부인의 1.3%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2.7%에 달하고 있다. 2006년에는 훨씬 증가하여 33.5%를 차지하였는데 10,000명이 넘는 여성이 결혼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시·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외국부인'의 경우 경기도 지역이 6,409(22%), 서울특별시 6,004(20.6%), 경상남도 2,004(6.9%)순이며, 그 밖의 다른 지역은 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부인-외국인 남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2,835명(30.3%), 경기도 1,848명(19.8%), 부산광역시 464명(5%)이다. 다른

지역의 구성비는 2%내외이며 ‘한국인 남편-외국부인’, ‘한국부인-외국인 남편’ 모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증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초창기에 나이 든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총각의 결혼비율은 도시 거주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짐작할 있다.

전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혼인 건수에서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의 산업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농촌에 가면 결혼이주여성 이 이장이나 마을 부녀회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주여성의 정책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008년 9월 22일 발효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정 나아가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탈북주민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woori(women’s online resource and information) 홈페이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새국어 소식 2004년 6월호, 한양대 신문, 여성신문 76호 등 관련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족)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은 같은 국적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도 있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자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에다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를 더해 이중문화, 삼중문화의 틀 속에 살고 있음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2) 다문화가정에서 어려워하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7)은 경기도 거주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점으로 언어문제(34%), 경제적인 문제(16%), 한국문화이해(12%), 자녀양육문제(10%),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8%)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2008.8.)에서도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언어문제(30%), 경제적 어려움(14%),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12%), 자녀양육 문제(11%)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주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언어(주로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

지 못한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 소통이 자유스러우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의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 사소한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긴장이 따르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는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가 기준이 되고 다른 문화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가부장제와 더불어 인종 및 문화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교육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혈통과 가치관, 생활 풍습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 교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의 목적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부부는 아시아의 오랜 전통인 중매에 의해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상업적 중매,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것이라 부부의 결혼 동기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해서 (40.9%),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19.0%),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13.2%) 순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결혼이민자 실태조사”, 2008) 남편을 사랑해서, 종교적 이유, 기타를 제외한 결혼 동기는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본국경제 지원, 취업 등의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경제적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결혼이 31.2%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어 야할 다양한 형태의 의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주제로는 결혼관의 변화,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 변화, 가정해체, 외국인 범죄 문제, 이질적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부의 역할 기대와 갈등, 가사 노동의 분담 갈등), 국제결혼 가정문제(전통적 가치관의 지속문제, 자녀관계 문제, 부모관계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3)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가지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이 있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

셋째,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부적응을 유발한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의 문제는 다른 아동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부적응의 요인은

이중문화의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문화의 환경에서 가치관이나 국가관 등에서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제안

이주여성정책은 성(性)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인권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사회통합, 가족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며느리, 아내로서 복지수혜자 내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대상자로 자리매김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리 매김이 된다면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주변화되고 말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국민배우자로, 며느리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매김이 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가족에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주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마인드를 넘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인권 측면에서, 또한 외국인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틀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이주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지원

2006년도 12월 1일에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모부자 보호법 5조 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한 부모 여성의 지원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 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여성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립대회 (2009년 4월 3일, 충북 옥천)

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 등 학대로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조차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신고가 양성화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특히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추방 등의 문제로 피해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끝나면 출국 조치하지 말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한해서 고용허가제의 혜택

을 주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강화에 대해서,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업체의 경우 성희롱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일 때도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교육 시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성매매 방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여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조시기간이 끝나면 출국조치 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다.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이주여성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탈 성매매 이주여성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런 지원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 강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력을 강화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공장이나 식당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분야나 통역사, 문화 전달사,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사 등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등 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한국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나라 여성인력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농촌에서는 이주여성이 새마을 부녀회장과 반장을 하는 마을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돌봄의 사회적 분담

다문화가정의 경우 2세의 심리적 언어적 교육적 발달 지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방문 도우미 지원을 받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수업 등이 문제를 조기 해결해주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방치로 인해 장차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생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은 국제결혼가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비교적 성평등한 문화나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 가족은 오히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국제결혼가정이 성평등적이며 다양한 가족문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모든 문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이주여성을 존엄한 사람으로 보는 가치관과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생산적 활용 모색’에서 나아가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등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쪽으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실태를 평가할 때 복지적 관점보다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정책 중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에서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이주여성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 역시 출신국가의 문화 및 언어,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 입국 전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넓혀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재를 한국인 자녀 낳는 것으로 지위를 가늠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저출산 시대에 대비, 출산도구화 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급한 것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다. 관리방안이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은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힘들고 자칫 국제결혼정보업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정확한 신상 정보 제공과 교환, 맞선 시 정확한 통역제공, 알선업체 해외주재 사무소에 대한 규제, 미 이행 시 강력한 처벌 등을 담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센터와 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 전용 상담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에 이주여성협력관을 파견할 시 양쪽 결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혼인의 진정성 확인, 한국생활관련 정보제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이주여성만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5. 이주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통한 교회의 선교과제 설정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더니 한국어 교육 28%, 한국문화 이해 및 한국음식 교육 23%, 자녀양육 및 지도 19%,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결혼이민자여성은 한국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위해 한국문화 및 한국음식,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육구인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착지원

(1)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사용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습득 기회가 제공되도록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교회 내 한국어 강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지역단위 종합생활정보 제공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새롭고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두려움과 생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 결혼이민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의료기관, 상담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시장, 마트 등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안내책자를 언어권별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도 있다. 지원서비스를 하는 교회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한국문화 이해 교육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나 역사, 법률, 제도, 교육체계, 정치, 문화 등 한국사회전반과 지역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이 이주초기에 겪을 문화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김치만들기, 장만들기 등)

2) 복지 및 인권 강화

(1) 의료서비스 강화

결혼이민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병의원 연계 속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과 의료상담 및 임신과 출산 관련 검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도우미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담 기능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여성결혼이민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아무런 모임이 없다” 47.4%, “모임이 있다” 52.6%로 나타남으로써 모임이 있는 경우가 모임이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1차적 관계가 형성되어있을 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는 모임 등이 부족하여 자녀양육 및 지역사회 소식과 관련한 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2차적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생활적응관련 문항에서 외로움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를 볼 때 소통과 관계형성이 중요한 적응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베트남 여성의 경우 “참석하는 모임이 없다” 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여성의 경우는 종교모임(72.3%)에 참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여성의 경우도 종교단체모임(30.6%)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데 일본 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경우 종교적 이유로 결혼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몽골, 캄보디아, 태국 여성의 경우 사고 및 친목 모임이나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지원단체 모임 등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석하는 모임이 거의 없는 경우는 중국(64.2%), 베트남 (5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관계형성을 위한 교회와 자매결연 또는 멘토(mentor) 되어주기가 필요하다.

지역교회는 가정 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갈등이 폭력과 이혼 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화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부학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다문화가정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법과 교회가 아동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이들에 대한 투자의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부모를 상담하고 아동의 양육을 함께 돕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선입견을 갖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의욕에 앞서서 시작할 경우 과도하게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염려된다.

둘째로 다문화가정아동을 지원하는 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아동센터에서는 엄마나라에 대한 언어습득 및 문화교육의 기회 그리고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가장 잘 제공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훌륭한 나라의 혈통과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반쪽(half)이 아니라 투와이스(twice)라는 장점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공동양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끼리, 예를 들면 재혼가정의 청소년을 둔 부모모임, 입양한 가정의 부모모임,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부모자녀모임 등, 자조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다문화가정의 필요에 의한 수혜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4) 빈곤가족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9.4%, 생활방식의 차이 18.8%, 남편과의 갈등 16.3%, 시댁 식구와의 갈등 12.7%, 자녀교육 및 양육문제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199만원 이하 45.7%, 100만원 미만 24.6%, 200만원에서 299만원은 14.6%에 해당함으로써 2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을 가진 경우가 7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265,848원임을 고려한다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충북 지역의 평균 가족구성원수가 3.8명임을 고려한다면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64.9%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여성 2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문제가 41.1%, 과다한 가사노동 11.9%, 언어문제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자녀양육문제가 가장 크지만, 과다한 집안 일과 언어의 비유창성도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마땅한 일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74명 (10.0%)이나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어떤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장근로자 41.1%, 아동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사 16.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응답으로는 번역 및 통역, 음식점, 간호조무사, 자영업 등을 희망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기간 훈련과 훈련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직보다는 저숙련 노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희망하기는 하나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는 구인하는 업체와 구직하려는 이주여성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다. ●